'25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에서 기술력 있는 관내 유망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재) 화성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4년 12월~2025년 12월
- 상반기 마케팅 수행 인정 기간: 2024. 12.~2025. 5. 30.(금) 18:00
- O 하반기 마케팅 수행 인정 기간: 2025. 6.~10. 31.(금) 18:00
- □ (**사업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 (사업규모) 100개사 이상
 - ※ 회차별 지원금 예산 범위 내 기업 선정(상·하반기 각 1억 5천만원)
- □ (사업내용) 마케팅 활동 비용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 지원
-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 (예시) 검색엔진 마케팅 200만원, 디자인 제작 100만원 신청 가능

지원분야	지원항목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국문·해외), 제품 사진촬영, 제품 상세페이지 등
디자인 제작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등), 패키지(포장) 디자인, 앱디자인(UI·UX) 등
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구축, 자사몰 구축, 랜딩페이지, 고객지원 페이지 개설 등
71- 1-4	※ 기구축된 홈페이지·자사몰의 운영비 제외
검색엔진 마케팅	네이버, 쿠팡, 구글, 아마존 등 키워드 검색 광고, 배너 상단 노출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메타, 트위터, 틱톡,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광고매체 노출	TV, 라디오, 홈쇼핑, 신문, 잡지,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등
전시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팝업스토어 등
선시 박계정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홍보물 등

□ (추진일정)

상반기 사업공고	사업수행 및 사업접수	기업평가	선정공고		사업비 지급
기업지원플랫폼 상시 공고	마케팅 활동 진행 및 지원·접수	적격심사, 정량·정성평가	기업지원 플 랫폼 게시		마케팅 비용 지급
2.~5. 30.	′24. 12.~5. 30.	6. 2.~6. 20.	6. 23.		6. 23.~7.
하반기	사업수행 및	기업평가	선정공고	•	사업비 지급

하반기 사업공고	사업수행 및 사업접수	기업평가	선정공고	•	사업비 지급
기업지원플랫폼 상시 공고	마케팅 활동 진행 및 지원·접수	적격심사, 정량·정성평가	기업지원플랫폼 게시		마케팅 비용 지급
7. 1.~10. 31.	6.~10. 31.	11. 3.~11. 21.	11. 24.		11. 24.~12.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O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제출 ● 선택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신청서, 사업수행설명서			진흥원 서식, 서명 필수
2	표준재무재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4년 매출액 증빙
3	사업자등록증	•		서류 마감일 기준, 한 달 내 발급분만 인정
4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6. 3. 31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한 달 내 발급분만 인정
6	지출 증빙서류 원본			
7	신청기업 통장 사본			
8	마케팅 활동 원본			
9	법인 인감증명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건축물 대장,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11	기업평가 증빙서류 사본 (기술개발, 기업확인 및 인증)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신청방법) 온라인(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hipa.hscity.go.kr) \rightarrow 회원가입 \rightarrow 지원사업공고 \rightarrow 화성시 지원사업 \rightarrow 마케팅 지원사업 \rightarrow 참여신청

□ (신청기간)

- O 상반기: 공고일~5. 30.(금) 18:00, 2월 공고 예정
- 하반기: 공고일~10. 31.(금) 18:00, 7월 공고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② **서류 마감일 기준 서류 기간 파악 및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만료 시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 (우선선정) [2024년 제2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 선정※ 필수 서류 기재 및 제출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O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대상 업종^{참조4)}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동일분야 지원	2025년 정부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 사업에서 <u>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u> <u>분야</u> 로 지원받은 경우
수혜이력	직전 반기 화성산업흥원 마케팅 비용지원 사업 수혜기업
사업포기	2024년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마케팅 활동 포기한 기업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참조5)} 에 해당하는 경우)

3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과정)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업선정
필수요건 확인	→	일반평가(30점) 기업평가(20점)	→	마케팅 전략(50점)	→	기업 선정 및 공고

※ 동점 시 ①마케팅 전략, ②기업평가, ③일반평가, ④접수순으로 선정

□ (결과안내)

- O 선정안내: ^①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에 게시 및 ^②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O 공고일자
 - 상반기: 2025년 6월 23일(월) 18:00
 - 하반기: 2025년 11월 24일(월) 18:00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고대상: 회차별 예산 범위 내 선정 가능 기업

○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사업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sjg98@hsbiz.or.kr ☎ 031-278-4394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재) 화성산업진흥원	

-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 ① 적격심사: 화성시 소재, 업종, 중소기업 여부, 지원 이력, 선정 후 사업 포기 여부 등 필수요건 확인
- ② 정량평가: 소재지, 업력, 매출액, 기술 개발, 기업인증 등 평가 <**정량평가표>**

	평	가항목	제출서류	기준	배점	
수혜 이력		'23~'24년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23년~'24년 마케팅활동 지원금 수혜이력 보유기업	없음 상반기: '24년 상반기 하반기: '24년 하반기	-10	
		수혜 이력	※ 상반기: '24년 하반기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하반기: '25년 상반기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상반기: '23년 하반기 하반기: '24년 상반기	-5	
		화성시 본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3개 모두 해당	10	
	일	공장, 연구소	※ 화성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제출 필수 ※ 건축물대장, 연구전담부서 <u>미인정</u>	2개 해당	6	
		소재지		1개 해당	3	
	반			3년 미만	10	
	평	기업업력	사업자등록증	3년 이상~7년 미만	7	
	가			7년 이상	4	
정	_	기업 규모			5억원 미만	10
량	먇 (30)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7	
			표준증명에 표시된 2024년 매출액	2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80억원 이상	2	
평			기술 개발 및 ①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법인, 개인사업자 명의)	8개 이상	14	
가	기	기술 개발 및		6~7개	10	
	입	인증	※ 출원등록증, 디자인·상표등록은 <u>미인정</u>	3~5개	7	
			② ISO, KS, CE, HACCP 인증서	1~2개	4	
	평		① 이노비즈, 메인비즈	3개 이상	6	
	가	기업 확인 및 인증	② 벤처,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2개	4	
	(20)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개	2	

③ 정성평가: 5인의 전문가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점수 합산 <**정성평가표>**

	평	가항목	제출서류	기 준	배점
		회사 및		높음	15
	마	제품/서비스	회사의 주요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차별점 등	보통	10
저				낮음	5
정	케	-10101 -1011	해당 마케팅 분야 신청 사유, 마케팅 목표	높음	20
성	팅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목표 시장, 목표 매출액 등), 예상 성과 (매출, 고용, 인지도 등)	보통	12
평 가	전 략	기네포파		낮음	5
'	(50)	미케티 스케		높음	15
	(30)	마케팅 수행 내용	마케팅 수행 내용과 예산 집행의 구체성, 적정성	보통	10
		-110		낮음	5

□ (유의사항)

- ① 지원불가: [©]신청 분야와 동일 마케팅 분야로 2025년 정부 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기업, [©]직전 반기 화성산업진흥원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기업 지원 불가
- ② 사업포기: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하거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됨
- ③ 결과안내: 마케팅 활동 진행 안내 및 결과 통보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므로, 이메일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 두절 및 안내문 미숙지 주의
- ④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정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참조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음
- ⑥ 지원대상(업체)이 마케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경우만 지원
 - ※ 마케팅 수행 기간 내 활동 및 지출 발생 필수(기간 내 전시 마케팅만 소급 적용)
 - ※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u>화성산업진흥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u>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됨
- ⑦ 우선선정: '2024년 제2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우선선정** ※ **필수 서류 기재 및 제출 필수**
-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화성산업진흥원장

별첨

착조문서

.

참조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조 2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52호, 2024. 6. 17., 일부개정]

제4조(기업활동 지원)

-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고 중、고、대학생 또는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조 3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34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산업 기반 조성 사업
 - 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 나. 첨단산업 기술진흥 및 시험·인증·연구기관 인프라 조성
 - 다.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라. 인력·자금·투자·지식재산권·교육 등 지원
- 2. 기업 활동 지원 사업
 - 가. 지역특화산업(「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 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 다. 전(全)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라. 출자·투자 조합의 결성·운영
- 2의2 기업 활동 지원 사업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 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 · 보건점검 지원
- 3. 위탁사업
 - 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
 - 나.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 다. 국가, 경기도 또는 관련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참조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46209 중	의 대한			
46333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47311, 47312 8	다는 기계 및 사용이, 할만한 포크기타, 유민이와 포케터 및 포케 8개터 ***********************************			
47993 중	다던게 당군한데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 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 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 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1. 6. 15.>
-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 2.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6. 1.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